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4.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 3. 24.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1994. 4. 1

다. 상정 일자: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세무1과장
최영명)

가. 제출이유

- 지방세법(1994. 1. 7. 법률제4720호)이 개정되고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제4561호)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불일치되는 용어 및 법조문을 정비하여 관련법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위함.

나. 주요골자

-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 변경(안, 제17조 제1항)
- 종전의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 내용이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 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인용부분 변경(안, 제19조 제1항)
- 납세의무자의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내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 변경(안, 제2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
진재)

- 지방세법(1994. 1. 7. 법률 제4720호)의 개정으로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의 내용이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안 제19조제1항의 인용 부분을 개정하고,

-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 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7조제5호와 제24조의 내용중 불일치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조희태 위원): “중기”와 “건설기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답변(최영명 세무1과장):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명칭만 바뀌고 종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6
----------	-----

제출년월일: 1994. 3. 24.
제 출 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1994·1·7 법률제4720호)이 개정되고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1993·6·11 법률제4561호)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불일치되는 용어 및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여 관련법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 변경(안, 제17조제5호)
- 종전의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 내용이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중 인용부분 변경(안, 제19조제1항)
- 납세의무자의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내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변경(안, 제24조)

3. 개정근거

- 지방세법(1994.1.7 법률제472호) 제2조, 제3조, 제181조 및 제184조의3 제2항제6호
- 건설기계관리법(1993.6.11 법률제4561호)

4. 개정조례(안) : 별 칙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호중 “중기의명칭”을 “건설기계의명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법제184조의3 제2항 제7호”를 “법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한다.

제24조(제목을 포함한다)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비과세및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생략)	제17조(비과세및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중기의 명칭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5. 건설기계의 명칭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제184조의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것을 말한다.	① 법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것을 말한다.
1. 내지4(생략)	1. 내지4(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u>중기</u>의 명칭 및 종류·취득년월일·등록번호·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기</u>를 취득한 때 2. <u>중기</u>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u>중기</u>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u>중기</u>가 과세<u>중기</u>로 된 때 5. 과세<u>중기</u>가 비과세<u>중기</u>로 된 때 	<p>제24조(<u>건설기계</u>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u>건설기계</u>의 명칭 및 종류·취득년월일·등록번호·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설기계</u>를 취득한 때 2. <u>건설기계</u>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u>건설기계</u>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u>건설기계</u>가 과세<u>건설기계</u>로 된 때 5. 과세<u>건설기계</u>가 비과세<u>건설기계</u>로 된 때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4. 4. 11.
시민보건의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2. 21.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 2. 22.
 - 다. 상정일자 :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업과장 이영복)
 -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자치구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하여 대

구민을 보호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전재)
 - 1)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물가의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물가관련규정의 재개정·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한 동위원회의 설치